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이의제기의 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4의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24의2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사전심사 등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4